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문장길 의원 (찬성자 12명)
- 의안번호 : 제1287호
- 발의일자 : 2020년 2월 5일
-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2. 제 안 이 유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도시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람객 및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교통 혼잡,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해당 자치구의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요금감면 조항에 도시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에 대한 요금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자치구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주민등록표상 해당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을 신설 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원조성으로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에게 요금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이용료 부과에 법적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는 공원관리청이 입장료 및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요금과 징수 방법은 조례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상위법 근거에 따라 동 조례에 서울시 공원의 입장료 및 점용료를 명시하고 있음.
- 동 조례에는 점용료(제13조), 이용료(제15조), 사용료(제16조)의 부과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요금의 납부방법(제18조), 요금의 환불(제19조), 요금의 감면(제20조)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특히 [별표 1]에는 공원 입장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원 중 입장료 부과 공원은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이 있음.

2)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

① 공원조성 이후 불편과 편익을 보는 관점

- 서울시내에 위치한 공원 중 입장료를 부과하는 곳은 서울식물원이 유일하며, 금번 조례안은 공원입장객 및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 혼잡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서구민들에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2018년 설립된 서울식물원은 전체면적 504,000 m^2 중 유료구간은 16%(80,000 m^2)에 불과하고 시민들은 84%의 면적을 항시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
 - 신규 공원 조성으로 교통량 증가와 유동인구 증가는 가늠할 수 있는 범위이나,
 - (※ 식물원 주차장 이용: 184면 중 평일 268대, 주말 659대)
 - 공원이 조성되면서 지역의 주거가치가 상승하였으며, 공원조성 이후 공영주차장 운영 등으로 불법주차가 감소하는 등 대형공원 조성에 따라 강서구를 포함한 서남권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됨.

② 실효성이 적은 입장료 감면

- 동 조례 제20조에는 6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에게는 요금을 면제(제1항) 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30명 이상의 단체에게 30% 감면(제2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할 경우에도 30% 감면(제4항)을 명시하고 있음.
- 다양한 대상에 대해 입장료 면제 또는 감면을 시행중에 있어 지역주민 할인(30%)을 추가하더라도 입장료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점을 감안하면 감면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③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 서울시가 설치한 시설(체육, 교육, 과학, 미술관 등) 중 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하는 사례가 없으며,

-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등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구민들에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포함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현재 서울식물원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경제적인 입장료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공원 소외지역에게는 또 다른 불평등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첨부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6.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7.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2.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 한다.

3. 30명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입장료나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입장료 :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 :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